

	등록번호	20180960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최초등록일	2018. 09. 14.	thelastpig.co.kr
	최종등록일	2024. 06. 20.	



정보공개서

(주)에프씨봉대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에프씨봉대박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T. 1600-0920 / F. 053-955-0928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53-955-09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 현황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8. 광고·판촉지출 내역
9. 가맹금 예치기관
10.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5.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 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프씨 봉대박	끝돈 외 4 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
	2013.01.08	2013.02.01	이채환	T. 1600-0920 F. 053-955-0928
	법인 등록번호	170111-0481440	사업자 등록번호	504-86-03819

- 당사는 현재 『끝돈』 가맹사업 외 『봉대박스파게티』 『봉대박점담』 『봉대박파스타&점담』 『끝소』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	이채환	끝돈 외 4 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2013.02.01 ~ 현재		이채환	T. 1600-0920 F.053-955-0928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이명진	끝돈 외 4 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23 길 7-2, 3 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2024. 03. 05.~ 현재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이채환	T. 1600-0920 F.053-955-092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끝돈	없 음
상 호	끝돈 OO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382820000 (2018.03.07)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329,728	660,775	-331,047	123,733	-121,035	-115,353
2022	347,784	798,230	-450,445	375,225	-137,489	-119,398
2023	269,953	549,565	-279,611	626,953	47,533	170,83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천원, 부가세미포함)	
		매출액	추정비율
봉대박스파게티	2021	15,996	전체 매출의 31.96%
	2022	14,311	전체 매출의 5.59%
	2023	13,578	전체 매출의 2.72%
봉대박찜닭	2021	2,105	전체 매출의 4.21 %
	2022	2,055	전체 매출의 12.17 %
	2023	2,142	전체 매출의 0.43%
봉대박파스타&찜 닭	2021	28,174	전체 매출의 56.29%
	2022	33,033	전체 매출의 12.91%
	2023	2,227	전체 매출의 0.45%
끝돈	2021	2,369	전체 매출의 4.73%
	2022	204,734	전체 매출의 80.03%
	2023	479,492	전체 매출의 96.18%
끝소	2021	1,090	전체 매출의 2.18%
	2022	1,090	전체 매출의 0.43%
	2023	1,090	전체 매출의 0.22%
보리봉치킨	2021	-	-

	2022	-	-
	2023	-	-
구슬로그릴	2021	-	-
	2022	594	전체 매출의 0.23%
	2023		

※ 구슬로 양대창은 2022 년, 구슬로그릴, 보리봉치킨은 2023 년 3 월경에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 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채환	대표 이사	2009.04 ~ 2013.01.13	FC 봉대박 대표	회사 경영 총괄
			2013.01.08~ 현재	(주)에프씨봉대박 대표이사	회사 경영 총괄
	이명진	감사	2024. 03. 05. 현재	(주)에프씨봉대박 감사	회사 내부 감사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 『끝돈』 가맹사업 외의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에프씨 봉대박	가맹사업 경영	2009.04.25 ~현재	봉대박스파게티 (등록번호:20090600054)이라는 영업표지의 스파게티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5.12.18 ~현재	봉대박찜닭 (등록번호:2015124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2.05 ~현재	봉대박파스타&찜닭 (등록번호:20190752)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 05. 05. ~ 현재	끝소 (등록번호:20191081)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보리봉치킨 (등록번호:20212373)이라는 영업표 지의 치킨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구슬로그릴(등록번호:20212195)이라 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구슬로 양대창(등록번호:20211928)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 구슬로 양대창은 2022 년, 구슬로그릴, 보리봉치킨은 2023 년 3 월경에 자진취소 하였
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 끝돈 』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
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끝돈	서비스표	2018. 10. 01.	4014018160000	이채환	2028. 10. 0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2017 년 10 월 10 일

2.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끝돈』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에프씨 봉대박	끝돈	이채환	2017. 10. 10.~ 2022. 05. 15.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113 (산격동, 3층전부)
(주)에프씨 봉대박	끝돈	이채환	2022. 05. 16. ~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23길 7-2, 3층

3.[끝돈] 업종

영업표지	업종	
끝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돼지고기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 끝돈 』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2	2	0	6	6	0	10	1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1	1	0
대구	2	2	0	2	2	0	6	6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2	2	0	1	1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1	1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1	1	0	0	0	0
경남	0	0	0	1	1	0	1	1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년도 말 「끝돈」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0	0	0	0	2
2022	2	5	1	0	0	6
2023	6	6	0	2	1	10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끝돈』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주)에프씨 봉대박	봉대박 스파게티	20090600054	스파게티 전문점	24/0	22/0	21/0
	봉대박찜닭	20151243	찜닭 및 치킨	3/0	3/0	3/0
	끝소	20191081	소고기 전문점	2/0	2/0	2/0
	봉대박파스타 &찜닭	20190752	파스타, 찜닭 전문점	10/0	6/0	5/0
	보리봉치킨	20212373	치킨	0/0	0/0	0/0
	구슬로그릴	20212195	한식	0/0	0/1	0/1
	구슬로 양대창	20211928	한식	0/1	0/0	0/0

※ 구슬로 양대창은 2022 년, 구슬로그릴, 보리봉치킨은 2023 년 3 월경에 자진취소 하였
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2023 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 맹점수	2023 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10	671,149	14,323	1,086,230	23,225	5,557	220	
서울	0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대구	6	738,097	14,481	1,086,230	22,533	5,557	220	
인천	0	해당없음						
광주	0	해당없음						
대전	0	해당없음						
울산	0	해당없음						
세종	0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강원	0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충남	0	해당없음						
전북	0	해당없음						
전남	0	해당없음						
경북	0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제주	0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를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 개 가맹점(광안리점 외 1)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10 개가 아닌 실제 8 개 가맹점의 연간평균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기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	10	59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신문 등	연중	56,397	56,397	0	2023 년

- 상기 금액은 당사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용으로 당사의 가맹사업 『봉대박스파게티』, 『봉대박점담』, 『끝돈』 『끝소』 『봉대박파스타&점담』 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이며 각 가맹사업별 광고판촉비용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끝돈』 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해당사항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에프씨봉대박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 개월 소요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가입은 가맹계약 시 납입하는 예치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가맹 계약건에 대해 계약단위로 보험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절차 및 보장 범위, 지급 조건 등은 서울보증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당사는 먼저 보증보험증권을 귀하에게 발급하고, 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귀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기관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 기관의 약관에 따라 진행 방식 및 내용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끝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홍보비	₩2,200	계약 체결일	홍보 개시 이전 계약 해지	홍보가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그릴 및 화로 시스템 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	불판 및 화로구이 시스템 사용 보증금	계약시 따로 렌탈 계약서 작성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행담보목적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 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19,7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개점홍보비	₩2,200
그릴 및 화로시스템 보증금	₩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기준	115.5㎡(35평)기준					
총 계		168,480	4,814			
인테리어 (점포 공사)	디자인S/ 메이컴퍼니	65,450	1,87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특수조명	디자인S/ 메이컴퍼니	2,2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간판	유성디자인/ 거성컴퍼니	12,0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설비, 기자재, 집기류	신광종합 주방	26,500	757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테이블,냉장고, 냉동고,주방 및 홀 그릇류 등
초도 식재료, 물품	호파랑 푸드시스템	8,500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식자재, 기타물품 등
초도 물품, 주방설비류	가맹본부	23,875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유니폼, 메뉴판, 본사주방설비류 등
화로구이 시스템	가맹본부	9,484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12 SET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냉장 창고	디자인S /메이컴퍼니	11,000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테이블	가맹본부	8,118		물품입고전	납품전 계약취소	12 테이블 기준
POS 기계 구매	한울정보 통신	1,353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매장크기에 따라 금액변동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협력업체포함)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이의비용으로 당사에 3.3.㎡당 44 만원(부가세포함)의 감리(검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아웃테리어 (1m*1m 당 38 만 5 천원(부가세포함), 전면유리 및 샷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 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내·외부닥트공사, 외부화장실, 의자 등의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 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자가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끝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간판	간판, 입간판 등 [매장상황에 따라 실비측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유성디자인/거 성컴퍼니
인테리어	실내목공사 및 전기공사, 도장공사, 천장공사, 내부시설공사 등 (평당 187 만원/부가세포함)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디자인S/메이 컴퍼니
특수조명	특수조명 설치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디자인S/메이 컴퍼니
설비 및 집기류	테이블, 의자, 냉동/냉장고, 조리대, 그릇, 기타 주방집기류 등 비품일체 [매장상황에 따라 실비측정]	시공업체와 협의 결정	신광종합주방
초도물품	당사의 로고가 들어간 비품 및 기타물품 (별첨 2. 참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
초도 식재료	당사의 레시피에 포함된 원부재료 (별첨 2. 참조)	가맹계약 체결시	호파랑푸드시 스템㈜등
테이블	당사가 정한 테이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
기타	POS 설비 등	가맹계약 체결시	한울정보통신

- 당사는 메뉴 또는 본사 경영방침의 변경, 시장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위 공급 원·부자재의 종류, 단위 및 가격은 추가 또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의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없음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카드매출액의 2.2%	매약월5일	반환불가	실비	CMS 자동 출금동의 (미출금시 20 일/ 31 일 재출금 요청)
바나나 프로그램	한울정보통신	33	협의	반환불가	실비	단, 홀 전용 제외 배달매장의 경우 해당
화이트세스코	세스코	30평~40평이하 115,500원 40평~60평이하 148,500원 60평~100평이하 181,600원	협의	반환불가	실비	
점포환경 개선	미지정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 산정	교육 실시 7 일전	교육 실시 1일전 취소	교육 후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 판변경 비용	해당 없음					
인테리어, 시 설, 각종 기기 의 교체/보수 비용		협의	교체보수시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 구연수 등을 감안 하여 당사와 협의 하여 결정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 시 부담.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
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	내 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삼자물류로 공급하여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1600-0920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요청시	문의 1600-092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미실시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재고조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

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1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1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끝돈』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끝돈』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끝돈』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 금 수취여 부
부동산	해당사항없음				-
설비 및 집기	의탁자	EA	권장	신광종합주방	X
	냉동/냉장고	1260*805*1909	권장		X
	조리대	EA	권장		X
	그릇	EA	권장		X
테이블	테이블	EA	권장	가맹본부	O
숙성고	디알레소	EA	권장	가맹본부	O
포스	바나나 프로그램	-	권장	한울정보통신	X
화이트 세스코	화이트세스코	-	권장	세스코	X
인테리어	디자인 S/메이컴퍼니	-	권장	디자인S/ 메이컴퍼니	X
특수조명	디자인 S/메이컴퍼니	-	권장	디자인S/ 메이컴퍼니	X
간판	간판	-	강제	유성디자인/ 거성컴퍼니	X
화로구이 시스템	화로구이시스템	EA	강제	가맹본부	O

초도 물품	당사의 로고가 들어 간 비품	별첨2. 참조	강제	가맹본부	O
원·부 재료	냉동류, 냉장류 등 당사의 레시피가 포함된 원부재료 및 당사의 로고가 들어 간 비품	별첨2. 참조	강제 또는 권장	호파랑푸드 시스템(주) 등	X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 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끝돈 가맹사업과 관련한 원부재료는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순번	상품명	규격	단위	공급가격(단위:원)		구분
				상한	하한	
1	삼겹살 (1판=2개)	kg	중량	33,500원	29,500원	호파랑푸드 시스템(주)
2	플루마	kg	중량	48,000원	3,500원	
3	꽃목살(이베리코)	kg	중량	24,500원	24,500원	
4	김치말이분말	2.15kg	ea	24,000원	24,000원	
5	가브리	kg	중량	32,000원	21,000원	
6	꽃등살	kg	중량	13,100원	11,000원	
7	콩나물비빔소스	15kg	ea	43,560원	43,560원	
8	멜젓	3kg	ea	15,500원	15,500원	
9	국내산목살	kg	중량	24,000원	19,000원	
10	오도리	300g	팩	7,000원	7,000원	
11	봉대박야채슬라이스볶음 밥	300g*15ea	box	31,000원	31,000원	
12	끝돈된장찌개용소스	1.79kg	ea	10,890원	10,890원	
13	갯김치	10kg	box	37,000원	37,000원	
14	국수면	3kg	ea	10,000원	10,000원	
15	참기름	1.8L	ea	40,000원	40,000원	

16	구워먹는치즈	460g	ea	<u>11,000원</u>	11,000원
17	김치	<u>10kg</u>	box	<u>23,000원</u>	23,000원
18	헛개차원액	900ml	ea	28,500원	28,500원
19	늑간살	kg	중량	27,500원	26,500원
20	젓갈비빔소스	1kg	ea	25,000원	25,000원
21	말돈소금	250g	ea	8,200원	8,200원
22	고운고추가루	1kg	ea	14,500원	12,500원
23	킹갈비	kg	중량	57,500원	53,000원
24	된장찌개용분말	500g	ea	16,500원	16,500원
25	페퍼소스	1kg	ea	9,900원	9,900원
26	이태리소스	1kg	ea	5,500원	5,500원
27	굵은고추가루	1kg	ea	14,500원	12,500원
28	파무침소스	3kg	ea	8,800원	8,800원
29	리소면	500g	ea	4,400원	3,840원
30	양꼬치시즈닝	500g	ea	14,000원	14,000원
31	한성소스	10kg	ea	77,000원	77,000원
32	소이소스	330ml	ea	4,800원	4,800원
33	와사비	750g	ea	11,000원	11,000원
34	끝돈물티슈	1000ea	box	41,000원	35,000원
35	슬라이스치즈	15매	ea	6,400원	6,400원
36	끝돈냅킨	1000ea	box	54,000원	45,000원
37	베이컨	1kg	ea	14,000원	13,000원
38	청양굵은고추가루	1kg	ea	12,600원	12,600원
39	김치찌개용분말	400g	ea	6,600원	6,600원
40	타래소스	3kg	ea	25,000원	22,000원
41	세척기용린스	1.2L	말	19,900원	19,900원
42	김가루	1kg	ea	19,000원	19,000원
43	막창	300g	팩	7,500원	7,500원
44	끝돈일회용앞치마	100장	ea	17,000원	17,000원
45	냉동파	1kg	ea	3,000원	3,000원
46	세척기용세제	1.2L	말	19,900원	19,900원
47	돈지(불판기름칠)	5kg	ea	13,520원	13,520원
48	잡육(찌개용)	1.2kg	ea	5,640원	5,640원
49	끝돈비빔국수용소스	3kg	ea	9,900원	9,900원

50	유포멸치젓	3.7L	말	36,500원	36,500원
51	끝돈 계란찜용 분말	500g	ea	6,490원	6,490원
52	누룽지	4.5	ea	28,800원	28,800원
53	깨소금	1kg	ea	11,400원	11,400원
54	봉대박육장소스	3kg	ea	8,800원	8,800원
55	큐민씨드	400g	ea	11,300원	9,700원
56	순태젓갈	3kg	ea	50,400원	50,400원
57	베르사띠크림	1L	ea	6,000원	6,000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끝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천원)	비고
호파랑푸드 시스템㈜	계열회사	강제 원·부재료 권장 원·부재료	379,412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당사는 『끝돈』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 인테리어 공사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돈』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당사가 『끝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V. 3.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참조	1)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당사가 제공한 조리기준에 따라 제공할 것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신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 상품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타 가맹사업자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물품, 용역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 4 회 위반: 계약 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특수부위모듬 400g	46,000	서면 또는 전자우편 통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양념갈빗살 300g	30,000		
소고기케이크 600g	108,000		
소고기케이크 1000g	180,000		
플루마 130g	18,000		
삼겹살 150g	16,000		
꽃목살 150g	16,000		
가브리 130g	18,000		
꼬들살 150g	15,000		
꽃등살 150g	15,000		
갈빗살 150g	15,000		
껍항정 130g	18,000		
김치말미 국수(냉)	7,000		
단무지 비빔국수	7,000		
김치찌개	5,000		
원장찌개	3,000		
계란찜	5,000		
구워먹는 치즈(6조각)	5,000		
치즈찜갈북음밥	8,000		
보리누룽지탕	8,000		
이태리술밥	9,000		
청국장술밥	9,000		
공기밥	1,000		
명이나물	1,000		
탄산음료	2,000		
주류	-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에 통신 및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결론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 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끝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없음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끝돈』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2 회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1 항내지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15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7 항
지정된 PO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정보 및 기타 정보를 누락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3 항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S/V 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별첨 4. “QCS 평가기준미달 및 교육 불참 가맹점에 대한 조치 기준” 참조)	25 조 15
가맹본부가 정한 제품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6
가맹점이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유통기한을 넘긴 물품을 보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7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불량, 슬리퍼 착용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18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 가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25 조 19
광고물 제작 시 가맹본부의 BI 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25 조 20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별첨 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참조)	25 조 21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2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별첨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참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나”항과 하기 “다”항의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참조)
 1. 이물질, 혐오물질을 투입·혼입하거나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사용, 보관,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2. 고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 행위로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 조 2항 각호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600-0920

- 양수인은 반드시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100 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100 만원)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끝돈』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 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물론 이고 본 계약종 료 및 해지, 해 제 후 2 년 동 안 경업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돼지고기, 육류 및 당사가 취급하는 물품 등을 판매 및 배달하는 업종 및 이와 관 련된 가맹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및 샵인샵 등	국내 전 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1600-0920)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끝돈』 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끝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16:00~24:00 권장)	월 25일 이상	문의: 1600-09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 명 이상 [165 ㎡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5. “QCS 평가서” 참조)

관리 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식 자 재 (3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사입여부, 보관상태, 유통기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매장 별 반기1회 이상
조리, 상품, 서비스 (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서비스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시 설 기 구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조리기구 보관 및 청결상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방문 (고객지원팀 S/V)
개인(청결)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개인위생 및 복장 청결상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환경(매장청결)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 내. 외부 청결상태 확인 → QCS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끝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 계획 공 고 → 광고실 시 1개월전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 점의 행사 참 여 결정 → 광 고실시 2주전 까지 광고비 납부	광고 동의 절 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판촉행사 동 의 절차를 거 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 자의 70% 이 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 23 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 21 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를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 7 조(계약기간과 갱신)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끝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금이십만원(W200,000)씩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취급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당사에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당 2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도록 한다.
- ⑩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갑”이 지불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⑪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⑫ “갑”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⑬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60 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600-0920)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60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9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44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43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42~2	
교육	- 교육(개점 전 교육)	D-32~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 및 식자재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절차		
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전(정보공개서 14 일전, 가맹계약서 14 일전까지)에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선택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or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문확인서 수령 (14 일->7 일 단축희망 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or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 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용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10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8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u><분할지급 시 절차></u>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가맹본부 부담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고
해당사항없음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효율적인 『끝돈』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방법, 조리 및 메뉴 교육,接客방법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이론,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및 서비스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 및 강의교육	1일(2~4h)	비정기적 필수교육
특별 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일(2~4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끝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0일 (120h~200h)	550만원	최초 계약 시 이수 (1일 최소 4시간이상 교육)
수시 교육	1일(2~4h)	실습 및 강의교육	비정기적 필수교육
특별 교육	1일(2~4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및 해지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1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현황

재 무 상 태 표

제 1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41,186,814		80,168,514
(1) 당 좌 자 산		94,199,313		34,301,429
현 금		377,220		695,320
보 통 예 금		56,673,255		13,142,705
외 상 매 출 금		22,343,792		16,957,050
미 수 금		1,172,450		660,577
선 금 금		13,555,608		2,781,787
선 금 비 용		146,958		0
미 환 금 제 세		0		60,960
(2) 재 고 자 산		46,987,501		45,867,055
상 품		46,987,501		39,534,245
음 식 재 료		0		6,332,840
II. 비 유 동 자 산		206,597,563		249,559,536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140,533,915		146,762,695
비 품	120,492,695		120,492,69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945,030	117,547,668		120,492,695
시 설 장 치	26,270,000		26,27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283,750	22,986,250		26,270,000
(3) 무 형 자 산		41,063,645		32,796,835
특 허 권		27,930,182		22,875,875
상 표 권		1,363,636		1,363,636
개 발 비		7,272,727		7,272,727
디 자 인 권		4,497,100		1,284,60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5,000,000		70,000,000
임 차 보 증 금		25,000,000		70,000,000
자 산 총 계		347,784,377		329,728,050
부 채				
I. 유 동 부 채		286,645,074		161,873,667
외 상 매 입 금		251,650		0
미 지 금		14,535,340		1,479,460
예 수 금		1,325,190		1,089,120
부 가 세 예 수 금		3,700,500		1,972,080
예 수 보 증 금		126,500,000		136,000,000
선 수 금		127,162,134		11,800,000
미 지 금 비 용		12,867,230		9,533,027
II. 비 유 동 부 채		511,555,255		495,901,405
주 . 입 . 종 장 기 차 입 금		511,555,255		495,901,405
부 채 총 계		798,230,332		660,775,075

재 무 상 태 표

제 10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자				
Ⅰ.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결 산 금		550,445,955		431,047,025
미 처 리 결 산 금		550,445,955		431,047,025
(당 기 순 손 실)				
당기 : 119,398,930 원				
전기 : 115,353,934 원				
자 본 총 계		-450,445,955		-331,047,02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47,754,377		329,728,050

손익계산서

제 10(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쓰씨봉대박

(단위 : 원)

과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375,225,535		123,733,924
상품 매출	174,646,012		7,511,402	
가맹비수입	77,520,024		20,000,000	
수입수수료	21,545,670		22,500,225	
음식 매출	101,513,829		73,722,297	
II. 매출원가		233,633,673		48,251,256
상품 매출원가		172,693,332		9,433,332
기초 상품 재고액	39,534,245		29,824,845	
당기 상품 매입액	180,046,588		19,142,732	
기말 상품 재고액	46,987,501		39,534,245	
음식 재료 매출원가		61,040,241		38,817,924
기초 음식 재료 재고액	6,332,840		0	
당기 음식 재료 매입액	54,707,401		45,150,764	
기말 음식 재료 재고액	0		6,332,840	
III. 매출총이익		141,591,962		75,482,668
IV. 판매비와관리비		279,081,593		196,517,968
직원 급여	129,371,242		93,616,208	
잡 급여	0		1,866,420	
퇴직 급여	2,016,668		1,999,992	
복리후생비	6,268,580		3,866,910	
여비교통비	816,200		652,900	
접대비	200,000		200,000	
통신비	2,079,050		1,481,029	
수도광열비	3,652,915		2,707,877	
전력비	7,070,668		6,680,577	
세금과공과금	4,666,960		2,484,705	
감가상각비	6,228,780		0	
지급일차료	21,450,000		15,600,000	
수선비	404,000		1,430,000	
보험료	1,842,382		1,022,250	
운반비	1,305,100		777,837	
교육훈련비	0		99,000	
도서인쇄비	405,500		96,220	
소모품비	12,239,966		37,484,900	
지급수수료	53,314,152		16,082,833	

손익계산서

제 10(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

(단위 : 원)

과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광 고 선 전 비	24,649,400		8,488,300	
건 물 관 리 비	1,200,000		900,000	
V. 영 업 손 실		137,489,631		121,036,290
VI. 영 업 외 수 익		18,161,921		6,681,616
이 자 수 익	13,864		7,412	
보 조 금 수 익	17,496,000		2,000,000	
잡 이 익	642,087		3,674,204	
VII. 영 업 외 비 용		61,220		260
잡 손 실	61,220		26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실		119,398,930		116,363,934
IX. 법 인 세 등		0		0
X. 당 기 순 손 실		119,398,930		116,363,934

재 무 상 태 표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통합)

(단위 : 원)

과 목	제 11(당)기		제 10(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51,324,730		141,186,814
(1) 당 좌 자 산		148,509,930		94,199,313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5,947,956		56,950,475	
매 출 채 권	94,313,605		22,343,792	
미 수 금	0		1,172,480	
선 급 금	38,132,012		13,585,608	
선 급 비 용	111,387		146,958	
선 납 세 금	4,970		0	
(2) 재 고 자 산		2,814,800		46,987,501
상 품	2,814,800		46,987,501	
Ⅱ. 비 유 동 자 산		118,629,170		206,597,563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62,565,525		140,533,918
비 품	113,962,698		120,492,69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1,397,173)		(2,945,030)	
시 설 장 치	0		26,27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0		(3,283,750)	
(3) 무 형 자 산		41,063,645		41,063,645
산 업 재 산 권	29,293,818		29,293,818	
개 발 비	7,272,727		7,272,727	
디 자 인 권	4,497,100		4,497,10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5,000,000		25,000,000
임 차 보 증 금	15,000,000		25,000,000	
자 산 총 계		269,953,900		347,784,377
부 채				
Ⅰ. 유 동 부 채		549,565,176		798,230,332
매 입 채 무	336,000		251,680	
미 지 급 금	1,433,339		14,838,340	
예 수 금	215,730		1,325,190	
부 가 세 예 수 금	4,617,509		3,700,500	
주 입 종 단 기 채 무	357,530,808		511,585,258	
예 수 보 증 금	130,000,000		126,500,000	
선 수 금	51,747,520		127,162,134	
미 지 급 비 용	3,684,270		12,867,230	
Ⅱ.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549,565,176		798,230,332
자 본				
Ⅰ.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재 무 상 태 표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통합)

(단위 : 원)

과 목	제11(당)기		제10(전)기	
	금 액		금 액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V. 결 손 금		379,611,276		550,445,955
미 처 리 결 손 금	379,611,276		550,445,955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70,834,679 원				
전기 : -119,398,930 원				
자 본 총 계		-279,611,276		-450,445,95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69,953,900		347,784,377

손익계산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통합)

(단위 : 원)

과목	제11 (당)기		제10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626,953,550		375,225,535
상품 매출	317,014,267		174,646,012	
가맹비수입	192,467,857		77,520,024	
수입수수료	117,471,426		21,545,670	
음식 매출	0		101,513,829	
II. 매출원가		250,011,649		233,633,573
상품 매출원가		250,011,649		172,593,332
기초 상품 재고액	46,987,501		39,534,245	
당기 상품 매입액	205,838,948		180,046,588	
기말 상품 재고액	2,814,800		46,987,501	
음식 재료 매출원가		0		61,040,241
기초 음식 재료 재고액	0		6,332,840	
당기 음식 재료 매입액	0		54,707,401	
기말 음식 재료 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376,941,901		141,591,962
IV. 판매비와관리비		329,408,090		279,081,593
직원급여	62,956,103		129,371,242	
제수당	14,000,000		0	
퇴직급여	9,303,432		2,016,658	
복리후생비	3,044,690		6,268,580	
여비교통비	2,969,980		816,20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273,000		200,000	
통신비	1,856,907		2,079,050	
수도광열비	399,890		3,652,915	
전력비	3,772,099		7,070,668	
세금과공과금	1,942,524		4,666,960	
감가상각비	52,070,848		6,228,780	
지급임차료	14,673,948		21,450,000	
수선비	602,728		404,000	
보험료	1,239,281		1,842,382	
운반비	1,434,274		1,305,100	
도서인쇄비	460,728		405,500	
소모품비	10,787,152		12,239,986	
지급수수료	89,572,612		53,314,152	
광고선전비	56,397,894		24,549,420	

손익계산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프씨봉대박(통합)

(단위 : 원)

과목	제 11 (당) 기		제 10 (전) 기	
	금	액	금	액
건물관리비	1,650,000		1,200,000	
V. 영업이익		47,533,811		-137,489,631
VI. 영업외수익		124,140,562		18,151,921
이자수익	33,804		13,854	
유형자산처분이익	102,455		0	
보조금수익	0		17,496,000	
잡이익	124,004,303		642,067	
VII. 영업외비용		839,694		61,220
잡손실	839,694		61,22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70,834,679		-119,398,930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이익		170,834,679		-119,398,930

[별첨 2] 조도물품 및 식재료 LIST

1. 조도물품 리스트

(12table/35 평기준, 단위:원, VAT 포함)

구분	품명	출고단위		출고액	수량	총출고액
화로시스템	하트하트불판	1	EA	55,000원	60	3,300,000원
	화로본체	1	EA	275,000원	12	3,300,000원
	링大	1	EA	110,000원	12	1,320,000원
	링小	1	EA	44,000원	18	792,000원
	스텐데두리링	0	EA	31,900원	-	원
	물받이	1	EA	15,400원	18	277,200원
	숯통	1	EA	9,900원	50	495,000원
액자류	끝돈하트하트 그릴액자	1	EA	250,000원	1	250,000원
	목판 특허액자	3	EA	77,000원	3	231,000원
기타 리스트	젓갈돌그릇	1	EA	30,000원	20	600,000원
	고기저울	1	EA	1,083,500원	1	1,083,500원
	고기저울라벨 지	1	EA	330,000원	1	330,000원
	메뉴판	1	EA	27,500원	20	550,000원
	동계유니폼	1	EA	40,500원	2	81,000원
	하계유니폼	1	EA	19,000원	3	57,000원
	앞치마	1	EA	5,000원	10	50,000원
	모자	1	EA	17,000원	10	170,000원
	대기석현황판	1	EA	35,000원	1	35,000원
	돼지벤치	1	EA	770,000원	1	770,000원
	회전간판	1	EA	660,000원	1	660,000원
	디알레소DA- 22	1	EA	2,500,000원	1	2,500,000원
		합계		16,851,700원		

* 상기 품목 외에 당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품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2. 식자재 List (2023 년 04 월 현재)-호파랑푸드시스템㈜

분 류	No.	품 목 명	규 격	출고단위	거래형태
냉 동 류	1	플루마	kg	중량	강제
	2	꽃목살	kg	중량	강제
	3	냉동청양고추	슬라이스	box	권장
	4	김가루	1kg	ea	권장
	5	냉동파	1kg	ea	권장
	6	오돌이	300g	ea	강제
	7	봉대박야채슬라이스볶음밥	300g*15ea	box	강제

냉 장 류	1	삼겹살	kg	중량	강제
	2	가브리	kg	중량	강제
	3	갯김치	20kg	box	강제
	4	김치	10kg	box	강제
	5	멜젓	3kg	ea	강제
	6	페퍼소스	1kg	ea	강제
	7	파무침소스	3kg	ea	강제
	8	젓갈비빔소스	1kg	ea	강제
	9	봉대박육장소스	3kg	ea	강제

	10	끝돈비빔국수용소스	3kg	ea	강제
	11	콩나물비빔소스	15kg	ea	강제

상온	1	김치말이분말	2.15kg	ea	강제
	2	누룽지	4.5	ea	강제
	3	아이미	1kg	ea	권장
	4	굵은고추가루	1kg	ea	권장
	5	김치찌개용분말	400g	ea	강제
	6	고운고추가루	1kg	ea	권장
	7	큐민씨드	400g	ea	권장
	8	양꼬치시즈닝	500g	ea	권장
	9	헛개차원액	900ml	ea	권장
	10	끝돈냅킨	1000ea	box	강제
	11	끝돈물티슈	1000ea	box	강제
	12	국수면	3kg	ea	권장
	13	와사비	750g	ea	권장
	14	참기름	1800mL	ea	권장
	15	깨소금	1kg	ea	권장

	16	마늘기름	1800mL	ea	권장
	17	대파기름	1800mL	ea	권장
	18	유포멸치젓	3.7L	ea	권장
	19	세제(물비누)	13kg	말	권장
	20	세척기용세제	1.2L	말	권장
	21	세척기용린스	1.2L	말	권장
	22	락스	4.5kg	말	권장
	23	레몬에이드	1.8kg	ea	권장
	24	홍초	1kg	ea	권장
	25	소이소스	330ml	ea	권장
	26	카놀라유	18L	말	권장

* 상기 품목 외에 당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품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별첨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구 분	제품 등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차수적용기준
1. 이물질, 혐오물질을 투입·혼입하거나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사용, 보관,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2. 고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 행위로 소비자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9호의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시 적용)				적용 없음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통기한 변조 및 삭제하는 행위	1차 위반 제품공급중단 15일	2차 위반 제품 공급 중단 30일	3차 위반 계약 해지 절차진행		적용 없음
4.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원료 사용, 보관, 진열, 판매시(단, 1차위반 적발 시 제품유통기한이 1일 이하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1차 위반 제품 공급 중단 7일	2차 위반 제품 공급 중단 10일	3차 위반 제품 공급 중단 15일	4차 위반 계약 해지 절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5.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물질, 혐오물질 투입·혼입 행위 또는 부주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 행위	1차 위반 제품공급중단 7일	2차 위반 제품 공급 중단 15일	3차 위반 제품공급 중단 30일	4차 위반 계약 해지 절차	
6.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5호, 제8호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 시 적용)				적용 없음

- ① 위반사항 발생시 가맹본부에서 재교육(위생교육) 실시(교육비는 가맹점 부담)
 ② 계약해지 적용 시 재계약 불가
 ③ 제품 등의 공급중단 기간은 가맹가맹본부가 경감할 수 있음

[별첨4]

QCS 평가기준미달 및 교육불참 가맹점에 대한 조치 기준

1년 단위 적용

구분		조치항목	제품 공급 중단 기간	비고
평가 등급	C 등급		경 고	
	D, E 등급	1회	경고 및 보수교육 참석	3일
		연속 2회	경고 및 보수교육 참석	7일
		연속 3회	경고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 1차	10일
		연속 4회	계약해지 예정 통보 2차	미시정시 계약해지
교육 불참	1회		교육 재 참석 통보	
	연속 2회		경 고	3일
	연속 3회		경고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	7일
	연속 4회		계약해지 예정 통보 2차	미시정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별첨5]

QCS 평가서 (점)

(주)에프씨봉대박

20 년 월 일

구분	평가사항	평가점수(해당항목 “√”표기)					비고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5	4	3	2	1	
식자재	식자재 사입 여부(본사 허용품목은 제외)	사입없을 경우 : “5”점 적용 사입있을 경우 : 계약서상 “계약해지” 규정					
	상온 창고 식자재 보관 상태 및 유통기한 확인						
	냉장(동)고 식자재 보관 상태 및 유통기한 확인						
조리 상품 서비스	조리 시 적정량의 재료 사용 여부						
	조리과정 준수 여부						
	코스별 정확한 상품 제공 여부						
	상품별 맛에 대한 SV의 평가						
	내점 고객에 대한 근무자들의 CS 서비스 수준						
시 설 구	조리기구/식기류세척/소독/건조/정리/보관/청결상태						
	조리대/환기구/배식대/테이블 청결 상태						
	청소기구의 정리/건조/보관 상태						
	도마/칼/고무장갑 구분사용 및 보관 상태						
개 인	복장(명찰/유니폼)의 청결 및 착용 상태						
	앞치마/조리모의 착용 여부						
	손/손톱/두발 손질 및 청결 상태						
	보건증 소지/비치/갱신 여부						
환 경	취/해충의 정기구제, 소독 상태						
	점포주변/전면유리/간판/홀/화장실 청소 및 관리 상태						
	창고/다용도실정리/청소상태, 소화기비치 및 충약 상태						
	잔반과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덮개/청결)						
평가점수 합계 : 총 점 (등급)							
※ 평가점수 합계 : 86~100점(A등급), 66~85점(B등급), 51~65점(C등급), 50점 이하(D등급), 40점 이하(E등급)							
특이 사항							
확인	가맹점 대표 : (서명) 대리인 : (서명) S/V : (서명)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가맹점 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수령 자필확인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제공장소	
제공 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수령 자필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제공장소	
제공 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